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2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소관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차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문 2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A시에 발생한 ㉠ 대규모재난의 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甲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.

- 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甲이 인정하는 재난은 ㉠에 해당한다.
- ② ㉠이 대한민국 영역에서 외국인의 생명·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인 경우에는 甲은 외교부장관이 된다.
- ③ 甲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.
- ④ 甲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A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.

문 2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난의 발생을 발견하였음에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즉시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발생한 재난인 경우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문 3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‘위기대응 실무매뉴얼’을 조정·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ㄴ.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‘위기관리 표준매뉴얼’은 관계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.
- ㄷ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‘위기관리 표준매뉴얼’ 및 ‘위기대응 실무매뉴얼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ㄹ.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재난유형별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‘현장조치 행동매뉴얼’을 작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
문 31. A도의 도지사 甲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은 관할 B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甲이 B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A도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ㄴ.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결과를 보고받은 국무총리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甲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ㄷ. 국토교통부장관은 B 지역에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- ㄹ. 행정안전부장관은 B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아 보수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B 지역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.

① ㄱ, ㄴ

② ㄱ, ㄹ

③ ㄴ, ㄷ

④ ㄷ, ㄹ

문 32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㉣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X광역시의 시장은 X광역시 Y동의 화재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,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.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화재로 인해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㉠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한 후 지체 없이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.

한편, 위의 화재가 발생하자 X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고,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㉡ X광역시 소방본부장 甲은 즉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긴급수송 및 구호품의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. 그리고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㉢ 甲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제한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.

이후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㉣ 甲은 신속기동요원, 자원지원요원, 통신지휘요원, 안전담당요원,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 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된 권역현장지휘대를 구축하였다.

① ㉠, ㉡

② ㉡, ㉢

③ ㉡, ㉣

④ ㉢, ㉣

문 33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및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·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자연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,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문 34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·운영하게 하려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나,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② 재난상황이 끝난 후 실시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,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)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긴급구조교육을,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긴급구조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문 35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·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하여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.
- ②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.
-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 통제단장이 한다.
- ④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가 현장지휘소에 파견해야 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.